

## 물부족 해결의 첫번째 과제

최 영 승\*

역사학자들은 로마환경회의, 리우환경회의 등에서 지구는 이제 불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많은 석학들이 물로 인한 분쟁이 전쟁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예고 하고 있고 UN에서조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최근 『50년 이내에 물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이렇듯 물부족이 지구촌 최대의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물은 이제 무한한 천연재가 아닌 희소한 경제재로 자리바꿈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이미 물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물거래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를 지배해온 자연을 이용한 부와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자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연의 고갈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 중 가장 중심이 될 부분이 바로 물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 오염의 심화 등의 요인이 겹쳐 생명의 근본인 물이 위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폭포, 북미의 나이아가라폭포, 남미의 이구아수폭포 그리고, 알프스, 록키, 안데스의 만년설을 보고있는 관광객들이라면 무슨 난데없는 물타령이냐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소리는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모두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서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물사정 그것도 복잡한 수질문제가 아닌 수량문제 만이라도 그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

년간 강우량이 세계평균보다 다소 많다고는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1인당 강우량은 세계 평균 34,000톤의 1/11밖에 되지 못하고 그나마 오는 비도 장마철인 6~9월사이 4개월동안 70%가 쏟아져 거의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비가 좀 적은 해에는 홍수가 나더라도 태풍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 우리의 현실이다. UN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실태를 “한국은 물기근 우려 국가 군이며 세계 수자원 보유서열 79위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얼마전 물문제가 한창 신문지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을 때 정부가 마련한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는 현재건설 중에 있는 9개 다목적댐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10년뒤면 물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그대책으로서 2011년까지 34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수량면에서 9%수준의 용수예비율을 확보토록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수량확보를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정해진것 같으나 우선 재원문제부터가 여러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도 있지만 궁하면 통한다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우선 믿어보도록 하고, 여기서 필자는 수자원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이 엄청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할 과제 하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대체로 지표수와 지하수로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장

확보되고 있고 지하수는 대수층이 깊지 못하여 지표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총용수 수요의 10%내외 수준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조 또는 비상수원으로서의 활용 수준정도로 생각할 때 수량확보는 지표수의 저류시설인 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량확보를 위한 댐건설에서 부닥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선 댐건설로 고향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수물주민의 생사를 건 댐건설 반대 문제, 공특별에 따라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사업에 또는 이주정착금지권 등이 보장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금이 미흡하여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간접피해보상기준에 대한 반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간과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댐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이유로, 그리고, 주민의 감소, 생활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상권의 상실, 교육여건의 불리 등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전과는 달리 국가정책사업의 불가피성에 대한 계도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여론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입장도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댐 사업은 계획수립 초차도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우리는 정말 “오일쇼크”가 아닌 “워터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경제사회 발전은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와 참혹스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모두가 심각하게 고려 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실감하고 관계부처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하나 이분들에 대한 수자원 전문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이 그만큼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문제의 해결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소한 걸림돌은 과감히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적은것에 연연하다가 큰것을 놓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

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소심증환자가 세상을 경영하지는 못하는게 아닐까.

정부관계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과감히 새로운 사고에서 댐건설 지역과 주변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댐건설에 따른 새로운 지원체재를 갖춰야 한다.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합의만이 성공적인 댐 사업을 보장할 수 있다.

댐은 타 개발사업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한다. 도로나 토지개발은 주변지역에 상당한 개발이익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댐은 오직 수혜자에 대한 상대적 피해감만 줄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익이라고는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논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것은 바로 특별법을 가능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의 수원지역대책 특별조치법(수특법)이 그 실례라고 본다.

물론 일본의 수특법은 댐 등의 건설로 인해 그 기초 조건이 심하게 변화하는 수원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댐 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산·치수 또는 상·하수도 등 수원지역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법이니만큼 댐건설에 따른 보상기준 까지를 다룬 법은 아니다.

물의 위기시대에서 물자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을 생각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가칭 댐법이 제정된다면 댐주변 지역개발과 지원 부분에 투자비가 현재보다 물론 많이 추가될 것이나 댐사업의 기본계획 고시에 지역 지원 및 개발 사업계획이 포함되고 댐 수물지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공특별과 차등적 보상 기준을 둠으로써 수물지역과 주변지역의 댐건설에 따른 반감 또는 상대적 상실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댐저수지 수질보전 등 댐 관리자의 의무조항을 둠으로서 댐 관리자에 대해 댐상류 수질대책의 무도 부여하여 댐 하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댐방류량에 의해 희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의미의 수량-수질 일원화 개념이 아닌 댐 상류지역에 대한 수량

-수질관리 일원화도 부분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량확보를 위한 준비는 우선 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물의 시대에 대비하여 물 부족해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댐의 개발·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라도 사회적 합의를 근간으로 한 성공적인 수자원 개발 체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보면서 현재 정부관계부처에서 이미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수자원관계 전문공직자에 대해서 깊은 찬사를 보내고 아울러 이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수자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